

삼척시의회 청사 경계 청원경찰 복무 규정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1995. 1. 27

발의자 : 신상균의원외 6인

1. 제안이유

삼척시의회 청사 시설경계 청원경찰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의회 청사 시설경계, 출입자 통제, 감시등 청원경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척시의회 청사시설 경계 청원경찰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원경찰(이하 "경경"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기 시장이 임명한 자 중 의회청사 시설경계, 출입자통제, 감시를 주 업무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복무

제3조(경설근무의 의무) 경경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근무 기강을 확립하여 동료·상호간에 신뢰와 협진을 지키야 한다.

제4조(용모 및 복장) ①경경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이 규정한 제복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토록 한다.

제5조(환경정돈) 칭경은 근무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맑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휴대) 칭경은 근무중 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한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한다.

제3장 근무 및 감독

제7조(근무편성 및 근무요령) ①칭경의 근무는 각자 지정된 칭사내에서 1일 1교대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근무교대시간을 매일 오전 9시로 한다.

③자체 경계근무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임무) 삼척시의회 근무 칭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칭사내·외 출입자 통제 및 감시
2. 의회 회기중 방청객 출입관리
3. 주·야간 칭사 경계
4. 기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규정

제9조(근무명령) 칭경의 근무명령은 의회사무국장이 월별 근무명령을 발령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무하지 못한 때에는 근무 전일까지 사무국장에게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칭경관리 및 감독) 칭경의 관리 책임자는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주1회 정신교육실시와 직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근무일지비치) 칭경근무지에는 빈표의 근무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휴가 및 정계

제12조(사기진작) 사무국장은 청경의 민답 및 교충치리, 직무 의욕 및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과 지방공무원법, 삼척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삼척시공무원근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정계) 시장은 청경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17조 및 삼척시청원경찰정계규정을 준용한다.

1. 법 및 규정,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구역내 안전사고 기타 위해 및 손해를 발생케 할 때
4. 기타 청경으로서의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할 때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근무일지							
				전 재	개원	개장	국장
19 . . . (요일, 날씨)							
소속	삼척시의회	직명	청원경찰	성명			
근무상황							
지시받은사항		조치사항					
보고사항		인계사항	1. 물품 2. 문서 3. 기타				
비고 :							